

『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권재욱 의원 외 8명

2. 제안이유

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, 지위 및 산림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시장 및 임업관계자 등의 책무(안 제3조)
- 재정지원 및 대상(안 제4조 ~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「민법」 제32조,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불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19. 8. 30. ~ 9. 6.) 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」 은

-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등 임업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, 구미시 전체면적의 55%를 차지하며 잠재력이 있는 임업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보호, 산림소득증대, 전문임업인 양성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